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제3차)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53
------	-----

2005년 6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6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 6월 23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이 봉 화)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의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제1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취득 1건, 건물 신·증축 23건, 처분 1건을 추가하고자 본 변경계획안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임.

3. 재산관리계획 현황

- 취 득(24건)
 - 신축 및 증축 (23건)
 - 건물 184,832㎡, 353,482,046천원
 - 매 입 (1건)
 - 토지 (1건) : 84,670㎡, 276,310천원
- 처 분(1건)
 - 매 각 (1건)
 - 토지 (1건) : 6,998㎡, 710,924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이청수)

□ 검토요지

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25건으로 많은 사유에 대하여

-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3차)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과정에 부합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관리부서인 재산총괄관이 시 전체를 파악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 이 중 서부노인요양센터 등 6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것이며 누락되었다가 제출된 것은 17건이고 나머지 2건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취득할 토지와 중량구에 매각할 토지임.
-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 재산취득(건축물 신축 등)현황을 2003~2005년도 예산서에서 토지매입비 및 건축물 신축 등 내역을 발췌하여 해당부서 통보하여 파악한 결과 제3차 변경계획 반영 23건, 관리계획 기 반영 6건, 관리계획 비대상(손실보상 등) 18건, 중복사업(계속비) 12건, 2004년 이전 사업완료 25건, 기타(사업취소, 사업 미추진) 7건으로 파악되었는데,
- 이 중 2004년 이전 사업완료 된 25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에는 행정재산

으로 등재되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나.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3차)안에 포함된 25건 중 제3공무원수련원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매입하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80외 15필지 84,070㎡의 토지와 중랑문화체육관 건립을 위해 중랑구에서 매각 요청한 시유지 3필지 6,998㎡를 중랑구청장에게 매각하는 2건만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을 뿐임.
- 나머지 마포구 성산동 369-2 외 13필지에 건립중인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23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내용분석(세부내역 - 별표1)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제3차)안 중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취득 공유재산은 23건으로 이미 준공된 것이 4건, 2005년도 준공 7건, 2006년 준공 6건, 2007년도 이후 준공예정인 6건이며 건축물 신축공사를 2002년 이전부터 시작한 것도 10건에 이르고 있음.
- 건축물의 사용 목적별로 분류하여 보면 노인복지센터 6건, 청소년수련관 6건, 병원시설 4건, 학교시설 4건, 자원회수시설 1건, 체육시설건립 1건, 농업기술센터 1건 등으로 주로 노인, 청소년,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 학교시설 등 공공목적에 위한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15필지 84,670㎡로 12명으로부터 276백만원(공시지가 기준)에 충주시로 하여금 위탁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반영한 것임.
- 중랑문화체육관 건립을 위해 중랑구청장이 매각요청한 시유지 3필지 6,998㎡의 토지는 당초 시에서 용마산 면목약수터지구 공원내 중랑여성문화회관 건립 계획에 의거 매입하였으나 충북투자주요인해 2002. 12월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중랑구에서 다목적 체육센터 기능을 수행할 문화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매각 요청한 것으로써 2003년 1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지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지상1층 슬라브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

□ 결 론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된 6건을 포함하여 23건은 기정사실에 대한 것이고 토지매입 1건과 매각 1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임.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취득부분 특히 건축물의 신·증축에 의한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경유하지 않았는바 다음 변경계획안부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경유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 중랑문화체육관 건립을 위해 중랑구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미 2003년 11월부터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등 시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 되었는데 바감사관으로 하여금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임.
- 아울러 매각하여야 할 공유재산 중 아직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하여

도 일제히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제3차)안에 포함된 건축물의 신·증축관련 23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만 예산심의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만 예산심의심사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경영기획실과 협의
- 매각대상 토지 중 시의회 승인건에 대해 파악하여 일괄 신청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7. 소수 의견의 요지

-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예산과)과 협의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